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이하 "SSK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SSK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대학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동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SK 연구집단"이란 SSK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팀"이란 SSK사업의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를 수행하는 소형 규모에 해당하는 SSK 연구집단을 말한다.
3. "연구단"이란 SSK사업의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를 수행하는 중형 규모에 해당하는 SSK 연구집단을 말한다.
4. "연구센터"란 SSK사업의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를 수행하는 대형 규모에 해당하는 SSK 연구집단을 말한다.

5. "진입"이란 기존의 SSK 연구집단이 다음 단계의 SSK 연구집단으로 지원유형을 지속 또는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연합"이란 두 개 이상의 동일 지원 유형의 연구집단이 하나의 연구집단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7. "연차평가"란 SSK사업의 단계 내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단계평가"란 SSK사업의 단계 종료 시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전임연구인력"이란 연구교수를 포함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동 사업에 연구전념을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상근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교수를 포함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①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SSK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이사장은 그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SSK사업을 위탁 수행한다.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장관의 승인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간 사업위탁협약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대학 및 연구자가 SSK사업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사장이 대신 사업내용을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대상에 대한 연차(단계)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
3. 신규과제 선정 계획
4. 사업 관련 제재조치
5. 사업과 관련한 그 외 주요 사항 등

제5조(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SSK사업의 자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사장 소속으로 SSK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방식 및 유형

제6조(SSK사업 과제 유형) ① SSK사업의 연구과제는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와 연구집단지원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②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는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 등 총 3개 유형의 연구집단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연구집단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팀 : 연구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3인 이상
2. 연구단 : 전임연구인력 2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7인 이상
3. 연구센터 : 전임연구인력 4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14인 이상

③ 연구팀과 연구단은 단계 평가를 통해 각각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

④ 연구팀에서 연구팀 또는 연구단으로, 연구단에서 연구단으로 진입

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단이 연구팀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⑤ 연구팀에서 연구단으로 진입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동일 단계의 연구팀이 연합하여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합하는 두 개의 연구집단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연구센터의 설치) 연구센터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 금액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연구인력의 구성) ① SSK사업의 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SSK 연구교수, SSK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② 연구단에서는 SSK 전임연구인력을 최소 2인 이상 필수적으로 임용해야 하며, 연구센터에서는 최소 4인 이상의 전임연구인력을 필수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과 연구센터는 최소 1인의 전담행정지원인력을 임용해야 한다. 단, 조교와 연구원은 전담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활용할 경우 대학의 장은 동 직원이 SSK사업의 행정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연구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SSK 연구교수와 SSK 전임연구원

은 공개 채용 및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채용 및 임용하지 않을 경우 연구집단의 연구책임자는 비공개 채용 및 임용사유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차 및 단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의 연구자와 영 및 규칙 상의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의 연구자를 포함한 정부 정부의 연구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SSK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및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채용 및 임용될 수 없다.

③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각 단계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원의 채용 및 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SSK 연구교수는 연구센터 소속으로 임용되어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센터장의 권한과 책임) 연구센터장은 해당 연구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장관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인력의 연구활동외 수행) ① SSK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와 관련된 강좌의 경우 연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주당 3시간 이내로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제12조(참여인력의 인건비) ① 일반공동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SSK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② 전담행정지원인력의 보수는 연구단과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간접비(규칙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를 의미한다)로 지급해야 하며, 동일대학에 복수의 연구단 및 연구센터가 있을 경우 3개 연구단 및 연구센터 기준 최소 1명의 전담행정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참여인력의 신분 변경) ①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는 SSK사업 신청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일반공동연구원의 변경이 가능하다.

② 연구보조원은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당시의 신분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연구과제 참여인력의 해외연수 지원) ① 연구책임자는 6개월

이상 참여한 연구보조원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학술 역량이 높은 자를 SSK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SSK 연수생의 연수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③ SSK 연수생은 해외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재단에서 별도로 정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동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단,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SSK 연수생은 해외연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즉시 연수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⑤ SSK 연수생이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1년간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할 수 없다.

제15조(연구센터 운영 및 의무) ① 연구센터는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센터는 SSK 연구교수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센터는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성과 및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센터는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전국 규모의 학술지 발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연구센터는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 협의 및 학술 대회 등의 개최

를 통한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성과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센터는 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서비스, 시민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물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이행 상황에 대한 연차평가에 서의 점검을 통해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센터 소재 대학의 권한과 책임

제16조(연구환경 보장) ① 대학의 장은 연구센터 시설 및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SSK 연구교수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4.95m²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 수행 조건 이행) 대학의 장과 연구센터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에서 정한 사업 수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센터장의 임명 및 해임) ① 대학은 연구센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센터장을 임명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연구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재단의 동의를 얻어 연구센터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대학이 재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연구센터장을 변경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감액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이사장은 사업에 선정된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가 소속된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 정부의 예산 사정, 당해 과제에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기타 장관 또는 이사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② 이사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효력 발생 30일 전에 대학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장관 또는 이사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연구센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이 중단이 결정된 경우
 6. 대학 혹은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가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기타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이사장의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협약이 해지된 연구센터가 속한 대학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대학 및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2조(전문가 자문) ① 이사장은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는 필요시 이사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자문 결과는 연차 및 단계 평가, 종합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대학 차원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단, 연구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과 연구단, 연구센터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 연구센터의 장은 연차 및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 시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이 자체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 및 단계 평가, 종합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사업 이행 점검) 이사장은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에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연차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연도의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단, 단계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연차평가를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매년 사업기간 종료 60일 이전에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차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④ 연차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평가결과 평가대상 연구센터 숫자의 하위 1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신청요강에 제시된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단계평가) ① 이사장은 사업추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연구팀 또는 연구단을 선정하기 위해 3년간의 사업 내용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3년차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에 단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④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기타 신청요강에 제시된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주의 및 경고 처분) ① 이사장은 SSK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주의 및 경고 처분 내용을 사전에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는 시정계획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2회 주의를 경고 1회로 간주하며, 사업기간 중 동일 사안으로 경

고를 2회 받거나 누적 경고가 총 3회를 초과할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선정이 취소된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대학의 장은 수시 점검, 연차 평가, 단계 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제29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대학 대응부담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법인 전입금 등에서 SSK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는 제외)

제3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규칙 및 처리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제31조(대응 부담금) 대학의 장과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장은 연도별 대응부담금을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금액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제32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① 모든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협약의

연구 개시일 후 1년을 의미한다)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경우 이전단계에서 교부받은 사업비 이월은 불가하다.

② 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사업비의 회계기간 내 집행 실적 및 이월 정도를 조사하여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3조(보고 의무)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장은 장관 및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이사장은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팀, 연구단, 연구센터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 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미규정 사항에 대한 보완)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이 맺은 협약과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9.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SSK사업 과제 유형에 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1.1.1. 이후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1.1.1. 이후 실시하는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부터 적용한다.